|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54호  <국무원의 신용유지(守信) 연합격려 및 신용상실(失信) 연합징계 제도를 완벽히 수립하여 사회적 신의성실 건설 추진을 가속화할 것에 관한 지도 의견> (국발 [2016] 33호)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나아가 세무와 관련된 엄중한 위법 신용상실 행위를 징계하며, 사회적 신용 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이를 공포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안건 정보 공포 방법(시범시행)’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4호,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1월 7일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정상적인 세수 징수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엄중한 세무와 관련된 위법 신용상실 행위를 징계하며, 사회적 신용 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국무원의 사회 신용 체계 건설 규획 요강(2014-2020년) 인쇄 발포에 관한 통지> (국발[2014]21호)와 <국무원의 신용유지(守信) 연합 격려 및 신용상실(失信) 연합 징계 제도의 가속화 추진으로 사회적 신의성실 건설을 완벽히 수립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 (국발 [2016] 33호) >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공포하고, 또한 정보를 관련 부문에 통보하며, 공동으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제3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와 당사자에 대한 징계 실시를 공포하는 것은 법에 의거 행정, 공평•공정, 통일된 규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누가 검사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공포한 안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세무기관은 공포된 안건 정보의 합법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2장 안건 기준  제5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은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건을 가리킨다.  5.1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 증빙을 위조, 변조, 은닉, 무단 인멸하거나 또는 장부 상 지출을 많이 기입하고 수입을 기입하지 않거나 적게 기입한 경우, 또는 세무기관을 거쳐 신고 통지를 하였으나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진행하여 미지급세금 100만 위안 이상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한 임의연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미지급세금이 당해연도 각종 미지급세금 총액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5.2 납세자가 미지급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옮기거나 은닉하는 수단을 취해 세무기관이 체납된 미지급세금을 추징하는데 방해하고, 체납된 미지급세금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5.3 국가의 수출 퇴세(세관환급금)를 편취한 경우  5.4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5.5 허위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출 퇴세 및 공제 세액 편취 용도로 허위로 기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6 보통 세금계산서 100장 또는 금액 40만 이상을 허위 발행한 경우  5.7 세금계산서 불법 인쇄 제작, 위조 및 변조, 불법으로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 전문 용품 제조, 세금계산서 감독 도장을 위조한 경우  5.8 탈세, 체납 세금 추징 도피, 수출 퇴세 편취, 납세 거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위가 있어 세무기관 검사를 거쳐 도피(실종)가 확인된 경우  5.9 기타 위법 상황이 엄중하고,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전관의 5.8항에서 일컫는 ‘세무기관 검사를 거쳐 도피(실종)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 대상이 세무국 조사국의 안건 집행 종료 전, 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기관 감독 관리를 벗어난 경우를 가리킨다.  제8조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은 세무국 조사국이 법에 의거 <세무처리 결정서> 또는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린 경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재심 또는 법원 판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효력이 확정된 후,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리지 않은 도피 (실종) 안건은 세무기관의 검증처리를 거쳐 공고 30일 후,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정보 공포  제7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공포하는 것은 주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 주소지, 법정대표인, 책임자 또는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실제 책임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 번호(출생 연월일은 숨김, 하동),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재무인원, 조직 구성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 번호를 공포  7.2 자연인에 대해서는 해당 성명, 성별 및 신분증 번호 공포  7.3 주요 위법 사실  7.4 도피 (실종) 상황  7.5 적용하는 관련 법률 근거  7.6 세무처리 및 세무행정처벌 등 상황  7.7 검사를 실시한 단위  7.8 공포한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 기구 및 종업원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해당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 주소지 및 직접적인 책임자의 성명, 성별, 신분증 번호, 직업자격증서 일련 번호 등을 함께 공포할 수 있다.  전관 7.1항 중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위법 사실 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와 불일치할 경우, 함께 공포하여야 하고 또한, 위법 사실 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석을 단다.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실제 책임자가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와 불일치할 경우,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안건과 관련된 행위가 있다는 증거 증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실제 책임자 정보만을 공포한다.  제8조 성 이하 세무기관은 적시에 공포 기준에 부합하는 안건 정보를 관련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성(省)세무기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포하고, 동시에 본 지역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급 세무기관 게시판, 신문, 광고, TV, 온라인 미디어 등 경로 및 기자 회견 등 형식을 통해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을 만들어 성(省)세무기관 포털 사이트의 공포 내용으로 연결한다.  제9조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공포 전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에 따라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안건 정보를 관련 세무정보 관리시스템에만 입력하고, 사회에 해당 안건 정보를 공포하지 않는다.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공포 후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에 따라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포를 중단하고 공고란에서 제외시키며 또한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완납한 상황을 연합 징계와 관리를 실시한 부문에 통지한다.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중대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탈세, 체납 세금 추징 도피 행위가 있을 경우, 본 조 제1관 및 제2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가 변경될 경우 적시에 변경하여야 한다.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가 변경된 후 더 이상 본 방법 제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포를 중지하고 게시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는 공포일로부터 만 3년이 될 경우, 공포를 중지하고 게시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안건 정보는 일단 관련 세무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당사자의 세수 신용 기록으로써 영구 보존한다.  제4장 징계 조치  제13조 본 방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는 당사자에 대해 법에 의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3.1 납세 신용등급이 바로 D등급으로 판정되며, 상응하는 D급 납세자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13.2 세금 체납을 조사하는 납세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이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미지급세금, 체납금을 정산하거나 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13.3 세무기관은 당사자 정보를 연합 징계에 참여하고 실시하는 관련 부문에 제공하고, 관련 부문은 법에 의거 당사자에 대한 연합 징계와 관리 조치를 취한다.  13.4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취한 기타 엄격한 관리 조치  제14조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사회에 공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납세 신용등급은 바로 D등급으로 판정되며, 상응하는D급 납세자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제15조 국가세무총국과 성(省)세무기관은 약정 방식을 통해, 동급의 연합 징계에 참여하는 부문에 세무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포한 본 관할 구역 내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제공한다.  시 이하 세무기관이 동급 연합 징계에 참여하는 부문에 대외적으로 공포한 본 관할 구역 내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 시 이하 세무기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에 대해 동태적인 관리를 실행하며, 안건 정보가 철퇴 또는 변경될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동급 연합 징계와 관리에 참여하는 부문에 갱신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 공포된 당사자가 공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이 수리, 재조사와 처리를 책임진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이상’은 기준 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기준 급을 포함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안건 정보 공포 방법(시범시행)’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4호,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는 동시에 폐지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公布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54号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建立完善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制度加快推进社会诚信建设的指导意见》（国发〔2016〕33号）精神，进一步惩戒严重涉税违法失信行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国家税务总局制定了《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公布办法》，现予以公布，自2019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4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11月7日  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公布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维护正常的税收征收管理秩序，惩戒严重涉税违法失信行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的通知》（国发〔2014〕21号）和《国务院关于建立完善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制度加快推进社会诚信建设的指导意见》（国发〔2016〕33号），制定本办法。  　　第二条 税务机关依照本办法的规定，向社会公布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并将信息通报相关部门，共同实施严格监管和联合惩戒。  　　第三条 公布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和对当事人实施惩戒，应当遵循依法行政、公平公正、统一规范的原则。  　　第四条 按照谁检查、谁负责的原则，对公布的案件实施检查的税务机关对公布案件信息的合法性、真实性和准确性负责。  第二章　案件标准  　　第五条 本办法所称“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是指符合下列标准的案件：  　　（一）纳税人伪造、变造、隐匿、擅自销毁账簿、记账凭证，或者在账簿上多列支出或者不列、少列收入，或者经税务机关通知申报而拒不申报或者进行虚假的纳税申报，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100万元以上，且任一年度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占当年各税种应纳税总额10%以上的；  　　（二）纳税人欠缴应纳税款，采取转移或者隐匿财产的手段，妨碍税务机关追缴欠缴的税款，欠缴税款金额10万元以上的；  　　（三）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  　　（四）以暴力、威胁方法拒不缴纳税款的；  　　（五）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  　　（六）虚开普通发票100份或者金额40万元以上的；  　　（七）私自印制、伪造、变造发票，非法制造发票防伪专用品，伪造发票监制章的；  　　（八）具有偷税、逃避追缴欠税、骗取出口退税、抗税、虚开发票等行为，经税务机关检查确认走逃（失联）的；  　　（九）其他违法情节严重、有较大社会影响的。  　　前款第八项所称“经税务机关检查确认走逃（失联）的”，是指检查对象在税务局稽查局案件执行完毕前，不履行税收义务并脱离税务机关监管的。  　　第六条 符合本办法第五条规定的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税务局稽查局依法作出《税务处理决定书》或者《税务行政处罚决定书》的，当事人在法定期间内没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或者经行政复议或者法院裁判对此案件最终确定效力后，按本办法处理；未作出《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的走逃（失联）案件，经税务机关查证处理，进行公告30日后，按本办法处理。  第三章　信息公布  　　第七条 公布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应当主要包括以下内容：  　　（一）对法人或者其他组织，公布其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或者纳税人识别号，注册地址，法定代表人、负责人或者经法院裁判确定的实际责任人的姓名、性别及身份证号码（隐去出生年、月、日号码段，下同），经法院裁判确定的负有直接责任的财务人员、团伙成员的姓名、性别及身份证号码；  　　（二）对自然人，公布其姓名、性别、身份证号码；  　　（三）主要违法事实；  　　（四）走逃（失联）情况；  　　（五）适用的相关法律依据；  　　（六）税务处理、税务行政处罚等情况；  　　（七）实施检查的单位；  　　（八）对公布的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负有直接责任的涉税专业服务机构及从业人员，税务机关可以依法一并公布其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或者纳税人识别号、注册地址，以及直接责任人的姓名、性别、身份证号码、职业资格证书编号等。  　　前款第一项中法人或者其他组织的法定代表人、负责人与违法事实发生时的法定代表人、负责人不一致的，应一并公布，并对违法事实发生时的法定代表人、负责人进行标注。  　　经法院裁判确定的实际责任人，与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不一致的，除有证据证明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有涉案行为外，只公布实际责任人信息。  　　第八条 省以下税务机关应及时将符合公布标准的案件信息录入相关税务信息管理系统，通过省税务机关门户网站向社会公布，同时可以根据本地区实际情况，通过本级税务机关公告栏、报纸、广播、电视、网络媒体等途径以及新闻发布会等形式向社会公布。  　　国家税务总局门户网站设立专栏链接省税务机关门户网站的公布内容。  　　第九条 符合本办法第五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当事人，在公布前能按照《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缴清税款、滞纳金和罚款的，经实施检查的税务机关确认，只将案件信息录入相关税务信息管理系统，不向社会公布该案件信息。  　　符合本办法第五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当事人，在公布后能按照《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缴清税款、滞纳金和罚款的，经实施检查的税务机关确认，停止公布并从公告栏中撤出，并将缴清税款、滞纳金和罚款的情况通知实施联合惩戒和管理的部门。  　　符合本办法第五条第一款第八项、第九项规定的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当事人，具有偷税、逃避追缴欠税行为的，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处理。  　　第十条 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发生变化的，应及时变更。  　　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变化后不再符合本办法第五条规定的，经实施检查的税务机关确认，停止公布并从公告栏中撤出。  　　第十一条 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自公布之日起满3年的，停止公布并从公告栏中撤出。  　　第十二条 案件信息一经录入相关税务信息管理系统，作为当事人的税收信用记录永久保存。  第四章　惩戒措施  　　第十三条 对按本办法向社会公布的当事人，依法采取以下措施：  　　（一）纳税信用级别直接判为D级，适用相应的D级纳税人管理措施；  　　（二）对欠缴查补税款的纳税人或者其法定代表人在出境前未按照规定结清应纳税款、滞纳金或者提供纳税担保的，税务机关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相关规定，通知出入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  　　（三）税务机关将当事人信息提供给参与实施联合惩戒的相关部门，由相关部门依法对当事人采取联合惩戒和管理措施；  　　（四）税务机关依法采取的其他严格管理措施。  　　第十四条 对按本办法第九条规定不向社会公布的当事人，纳税信用级别直接判为D级，适用相应的D级纳税人管理措施。  　　第十五条 国家税务总局和省税务机关通过约定方式，向同级参与联合惩戒的部门提供税务机关对外公布的本辖区内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  　　市以下税务机关是否向同级参与联合惩戒的部门提供对外公布的本辖区内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由市以下税务机关根据实际情况，与相关部门协商决定。  　　第十六条 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实行动态管理，案件信息撤出或者发生变化的，税务机关应当及时向同级参与联合惩戒和管理的部门提供更新信息。  第五章　附 则  　　第十七条 被公布的当事人对公布内容提出异议的，由实施检查的税务机关负责受理、复核和处理。  　　第十八条 本办法所称“以上”包含本数，“以下”包含本级。  　　第十九条 本办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4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同时废止。 |